

보건실 운영 규정

제정 2016.12.12.

개정 2018.08.20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내에 설치한 보건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보건실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.

1. 보건실 이용자 간호
2. 증상 별 일반 의약품 투여(학교 축탁의사 진료 시 전문 의약품 사용 가능)
3. 외상 환자 상처 간호
4. 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실시
5. 일반 건강상태 측정(혈압, 체온, 맥박 등 측정)
6. 보건 통계 작성 및 관리
7. 보건실 이용 만족도 조사 실시
8. 기타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
제3조(조직) 보건실은 학생처 내에 두며 간호사(간호사면허증 소지자)를 둔다.

제4조(이용시간) 보건실의 이용 시간은 본 대학의 정상 근무시간과 같다. 다만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(회계연도) 보건실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 회계연도에 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